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47
----------	-----

제출연월일 : 2020. 8. 14.

제 출 자 : 경상북도교육감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를 반영함으로써 부조리신고 처리와 관련한 신고대상 및 제보기한을 확대하여 공직자 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신고대상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을 포함(안 제2조제1호)
- 나. 신고기한을 일반부조리는 3년,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확대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뢰액 3,000만원 이상의 중대 비위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를 적용(안 제3조)
- 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원 명칭 변경(안 제9조제3항제2호)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관련부서 협의

가.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감사관-2590(2020. 4. 7.))]

나.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감사관-3173(2020. 3. 30.))]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학생생활과-6877(2020. 4. 7.))]

라. 입법예고 : 2020. 3. 27. ~ 4. 17.(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

마.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파견된 공무원 포함”을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교직원”을 “교직원, 교육감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을”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 제목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뢰액 3,000만원 이상의 중대 비위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를 기한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중등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공무원 등"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u>과건된 공무원 포함</u>)과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공·사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교육공무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을 말한다.	1. ----- ----- ----- <u>과건된 공무원을 포함한다</u> ----- ----- ----- ----- ----- <u>교직원, 교육감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을</u>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신고기한)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부조리 신고 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u>2년</u> 이내로 한다.	제3조(신고기한) ① ----- ----- ----- ----- <u>3년</u> -----.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뢰액 3,000만원 이상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생략) 2. 내부위원은 부교육감, 감사관, <u>중등과장</u>으로 한다. ④ (생략)	<u>의 중대 비위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를 기한으로 한다.</u>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 -- <u>중등교육과장</u>-----.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 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생략)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요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신고대상 및 제보기한을 확대한 조례안으로서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수반요인 없음

4. 작성자: 감사관 지방교육행정주사 손호열(054-805-3232)